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박진형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내버스·마을버스·특수여객자동차(장의차량)·전세버스·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바,

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